

FTA 시대, 섬유산업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염규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The Advent of FTA and the Future Vision for Textile Industries

Gue Bae Yeoum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1. 서론

WTO DDA 협상이 담보상태에 빠지면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의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 국내 섬유업계가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산지 기준은 각 FTA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 관세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섬산련의 FTA 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일 원산지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한-칠레와 한-EFTA FTA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모든 FTA 협정이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증명하거나 인증 수출자 절차를 통해 '원산지 자율증명' 적격 업체로 심사한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자율증명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필터링 장치가 없어 원산지 증명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완전 자율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발급자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기업 자체적으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 협력업체로부터 신뢰성 있는 원산지확인서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원산지 사후검증 시 원산지를 증명할 관련 서류의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 적발될 경우 관세추징 및 각종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FTA 원산지 업무 담당자는 최소한 자사 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구매원장, HS 코드, 물품의 생산프로세스, 원산지별 재료명세서, 완제품의 HS 코드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FT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입 관세는 품목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혜택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일부 수출 제품의 재료를 달리 사용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내 섬유업계는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향후 불어 닥칠 중국과의 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섬유업계는 FTA 통한 새로운 도약과 동시에 차별화 제품생산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중 FTA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 발효된 한-EU,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협상개시에 들어간 한-중 FTA와의 연관관계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FTA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이다.

2. 한-EU FTA 영향분석

2010년 4월 기준으로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TA)은 276개이며, 이 중 FTA가 60%인 161개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이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FTA는 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는데 세계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칠레, 아세안 등 총 45개국과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진행 중인 국가는 터키, 중국, 콜롬비아 등 15개국에 달한다. 전체 섬유류 수출금액 중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비중은 약 47%로 섬유류 교역에서 FTA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FTA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중소섬유수출기업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품목수 기준으로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 내 조기철폐(즉시+3년)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내 조기 철폐한다. 아울러 EU 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내 철폐하기로 한 반면 우리는 의류용 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수입액 기준 1.3%)에 대해 7년 철폐구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섬유제품 관련 EU측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고관세가 많은 섬유제품을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섬유업계의 대 EU 수출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양허가 수입액 기준으로 즉시철폐 61.2%, 5년 철폐 18.6%, 10년 철폐 20.2%인 것과 비교해 보면 EU측의 양허수준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EU FTA 주요 섬유제품의 양허수준을 한-미 FTA와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한-EU FTA에서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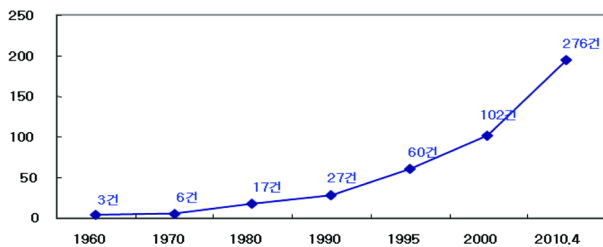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RTA 체결 추이

표 1. 한-EU FTA 및 한-미 FTA 섬유제품 관세양허비교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순모직물	(13%) 5년,7년	(8%)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편직제의류 (61류)	(8~13%)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0~32%) 즉시, 5년, 10년
직물제의류 (62류)	(8~13%) 즉시	(6.5~12%) 즉시	(8~13%) 즉시	(0~28.6%) 즉시, 5년, 10년
합성섬유 (54류~55류)	(8~13%) 즉시	(8%) 즉시	(8~10%) 즉시	(0~25%) 즉시, 5년, 10년

*표안의 ()는 MFN 실행세율

*자료: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소위 ‘2단계 공정기준(Two Step Process)’이 채택되었 다.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2단계 이상의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의류제품(Apparel)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종류를 가공단계별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4단계 변형기준(Fiber-forward-rule)이다. 이 기준은 섬유제품의 기초 원료인 ‘fiber’부터 시작하여 ‘yam’, ‘fabric’ 및 ‘apparel’까지 모두 국내에서 가공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두 번째는 3단계 변형기준(yarn forward rule)이다. 이 기준은 ‘yam’부터 시작하여 ‘fabric’ 및 ‘apparel’까지 모두 국내에서 가공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한-미 FTA에서 채택된 기준이다. 세 번째는 2단계 변형기준(fabric-forward-rule)이다. 3단계 변형기준(yarn forward)에 비해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한 원단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재단 및 봉제 등 제조·가공을 거쳐 생산한 의류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단일변형기준이다. 재단 및 봉제가공 공정(cutting and sewing)을 거쳐 생산한 의류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인데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비해 훨씬 완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한-아세안 FTA와 같이 가공단계와 관계없이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기도 한다(그림 2).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단섬유와 편직물 이외에도 양말, 아크릴직물, 순견직물 등의 섬유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섬유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14억 1,8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한-FTA 발효 이후 지난해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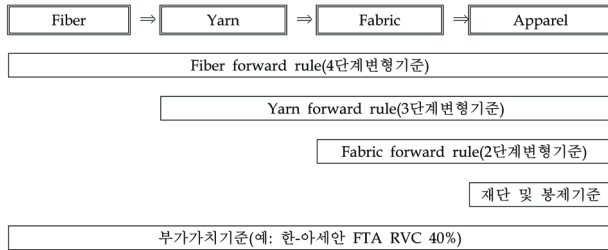


그림 2, 의류제품의 가공단계별 원산지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억 200만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EU 지역 내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해 하반기 대EU 섬유류 수출 증가율은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섬유류 수출증가율인 9.0%를 상회한 수치로 한-EU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폴리에스터단섬유의 경우 2010년 3월 EU의 반덤핑 종료에 이어 지난해 한-EU FTA 발효 이후 4%의 관세가 면제되어 대만 등 경쟁업체의 바이어가 한국으로 수입 선을 변화하면서 최근 오더가 확대되고 있다.

*PSF 수출실적(백만불, 증가율): '08년(162, -25.0) → '09년(128, -21.0%) → '10년(195, 53.0%) → '11년(307, 57.3%)

양말류의 경우 한-EU FTA 발효 이전에는 중국산 원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 후 EU로 수출하는 무역관행이 FTA 발효 이후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전환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별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벨

기에,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으로의 수출금액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로의 수출은 금액과 물량이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1년 하반기 EU회원국별 수출(백만 불, 증가율): 독일(128, 24.9%), 이태리(98, 7.5%), 프랑스(79, 16.4%), 영국(85, 22.2%), 스페인(59, 20.1%), 벨기에(45, 12.9%), 폴란드(40, 14.8%), 네덜란드(39, 4.1%), 핀란드(26, 1.5%), 루마니아(18, 46%) 등

수입의 경우 한-EU FTA 발효 이후 모달, 코트 및 재킷, 소모직물, 편직제 스웨터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모달은 주요 생산지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48.6% 증가한 4,600만 불이 수입되었으며, 고가의 코트 및 재킷은 이태리 및 프랑스 등으로부터 전년 동기대비 58.4% 증가한 4,500만 불이 수입되었다.

한편 한-EU FTA 협정에서는 면사, 인조 스테이플사, 재생장섬유직물 등 총 9개 품목에 대해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쿼터대상 품목은 역외 산 인조 스테이플섬유,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를 사용·혼용해 생산 후 EU로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표 2).

따라서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을 제외한 원산지 예외 쿼터품목들에 대한 소진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EU 수출확대를 위한 거래선 발굴, 수출선 다변화 등 적극적인 FTA 활용전략이 요구된다.

표 2. 한-EU FTA 원산지 예외 쿼터물량 소진현황('12. 2. 10기준)

HS코드	품목명	시작일	종료일	쿼터량	쿼터잔량
5204	면재봉사	2011.7.1	2012.6.30	86,000	86,000kg
5205	순면사			2,310,000	2,310,000kg
5206	혼방면사			377,000	377,000kg
5207	소매용 면사			92,000	92,000kg
5408	재생필라멘트직물			17,805,290	13,458,344SME
5508	인조재봉사			286,000	286,000kg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3,437,000	3,437,000kg
5510	재생방직사			1,718,000	1,718,000kg
5511	소매용 인조방직사			203,000	203,000kg

자료 : 유럽조세총국

표 3. 양국 양허 수준 개요

구분		즉시	3년	5년	10년
수입액	한국	72.0	13.4	14.6	0
	미국	61.2	0	18.6	20.2
품목수	한국	97.6	0.5	1.9	0
	미국	86.8	0	9.3	3.9

3. 한-미 FTA 영향분석

미국의 섬유제품은 고관세 적용대상으로 평균 13.1%, 최대 32%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의 미국 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의 시장접근이 가능해졌다(표 3).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화섬스웨터·남성셔츠·모직물·면양말·화섬단섬유 등 즉시철폐, 면직물·면셔츠·화섬편물 블라우스(관세율 6.0~32.0%), 화섬편물(탄성사 함유)·PEF직물(관세율 6.0~32.0%) 등은 5/10년 철폐(매년 10/20%씩 관세율 인하)예정이다(표 4).

표 4. 대미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철폐일정

즉시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5년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10년철폐 (품목, 수출, 관세율)
· 인조스웨터: 277(32.0%)	· 남성면셔츠: 67(19.7%)	· 화섬편물(탄성사 함유 등): 141 (12.3-10.0%)
· PE단섬유: 140(4.3%)	· PEF직물: 61(14.9%)	· PE강력사: 53(8.8%)
· 남성합섬셔츠: 134(25.9%)	· 화섬양말: 59(14.6%)	· PEF직물(염색): 24(14.9%)
· 면양말: 134(13.5%)	· 면직물: 54(6.0%)	· 남성면셔츠(편물) : 25(16.6%)
· 합섬모포: 36(8.5%)	· 화섬편물(염색): 38(10.0%)	· 여성면바지(직물) : 25(16.6%)
· 남성모직정장: 25(27.3-17.5%)	· 합섬편물블라우스: 17(32.0%)	

*수출은 미국수입통계 기준(백만불, '03~05년 평균)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국산원사 사용 촉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원칙으로 하되, 특혜관세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수준의 예외를 확보하였다. 원사기준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외 대상 품목을 보면 가방·린넨직물·여성자켓·남성셔츠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단일실질 변경기준(역외산 직물을 역내 재단 및 봉제), 아크릴 및 재생섬유, 재생필라멘트사(스웨터, 양말, 안감직물 등에 소요) 역외조달 허용, 역내 공급부족 원료를 사용한 수출제품(직물·의류 2억m²)에 대해서는 특혜쿼터 도입 등이 있다.



그림 3. 원사기준 예외 대상 품목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3국 제품이 역내 산으로 둔갑하여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하고 대미수출품 생산 관련기업에 한하여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례 제공(대한민국 정부→미국정부)키로 하였다. 다만, 제공할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실태조사를 공동추진하고, 미국에 제공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관보류 가능성을 낮추는 등 신속통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세관 협력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를 보면 섬유분야 평균 13.1%(최대 32%) 관세 폐지 시, 주요 경쟁국인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멕시코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대미 수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미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4~7월간 對미 섬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섬유원료(48.6%)와 섬유사(20.4%)가 크게 증가하였고 직물(5.1%)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3.7%)은 감소하였다(표 5). 주요 수출증가 품목으로는 폴리에스터 섬유(62, 55.0%), 염색된 면직물(50, 4.2%), 폴리에스터사(22, 37.5%), 타이어코드직물(21, 3.7%), 장갑(17, 13.3%)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의 관세가 5~10년 사이로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의류품목에 적용되는 고관품세 목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6>은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섬유류 수입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섬유원료는 -49.4%로 크게 감소하였고 섬유사만 소폭 증가하였다.

표 5.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섬유류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품목	FTA 발효전 (2011.4~2011.7)	FTA 발효 후 (2012.4~2012.7)	증감률 (%)
섬유원료	44	65	48.6
섬유사	40	48	20.4
직물	252	265	5.1
섬유제품	133	128	-3.7
합계	469	506	8.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6.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섬유류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품목	FTA 발효전 (2011.4~2011.7)	FTA 발효 후 (2012.4~2012.7)	증감률 (%)
섬유원료	21	11	-49.4
섬유사	29	29	1.2
직물	24	21	-11.9
섬유제품	66	56	-14.7
합계	140	117	-16.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이외에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846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신규투자, 고부가 섬유개발, 브랜드력 향상 등으로 신규 인력 및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도레이 새한(일본)은 한미 FTA를 대비 600억 원을 투자, 2013년 탄소섬유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하였던 한국 기업들이 한미, 한EU FTA를 겨냥하여 한국으로의 리턴을 검토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4. 한-중 FTA 영향평가

우리 정부는 2012.5.14 한-중 FTA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오는 10월 4차 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중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생산 확대에 따라 2002년부터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2000년 대비 13%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23% 증가한 65억 달러로 무역적자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로 양국 간 섬유산업의 전면적인 관세철폐 시 대중 섬유수출은 2억불 미만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약 6억불 수준으로 늘어나 무역적자폭이 매년 4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편, 중국내 의류생산설비를 보유하거나 대중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화섬직물 등 일부업종은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문의 경쟁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자본 및 신규설비 투자확대와 중서부 내륙의 값싼 노동력 공급 등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섬유와 산업용 섬유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FTA는 국내 범용제품 이외에 고부가가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국내 섬유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다량의 실업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최근 국내 섬유업계는 섬유 생산 및 수출실적 개선과 더불어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와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를 계기로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한-중 FTA는 이러한 우리 섬유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섬유원료부터 의류봉제까지 완전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최근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국내 유통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로 중국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이 대량 국내로 무관세 반입될 경우 국내 패션유통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섬유산업을 농업에 준하는 민감 분야로 설정하고 개방 시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대책수립과 전략적인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EU, 한-미 FTA와의 연관관계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FTA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한다.

5. 결론

최근 유럽 및 미국시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대량오더 중심에서 소량의 다발성 오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Fast-Fashion 브랜드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위축으로 인한 재고부담 경감 및 리드타임 단축 등 효율과 수익 극대화가 있다. 이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급자(Supplier)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것 보다 자신의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며, 자신의 품목에 매칭되는 바이어를 중심으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 원·부자재 조달, 생산 공정, 하청기업, 수요처, 회계 등 각 분야에 대해 FTA 컨셉에 기반 한 조사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어에게 FTA를 겨냥한 기획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수립 및 아이템 개발과 더불어 국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바이어 방문상담 등의 마케팅을 통해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시장의 반응, 그리고 다시 이를 제품 및 공급시스템에 피드백(Feed-back)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회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어 신규제품의 홍보와 이에 대한 바이어의 의견, 그리고 시장동향 파악까지 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현지 직접 마케팅 외에도 기존에 거래하던 바이어 오피스 및 에이전트 등 기존 벤더를 통한 간접 마케팅도 중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시장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리얼타임 공급(Real time delivery)능력과 차별화된 아이템 제시능력이 돋보이는 ‘스마트 공급채널’로 오더 fulfillment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여력이 부족

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유력한 벤더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바이어와의 면담을 통해 자사 아이템의 컨셉과 차별성, 그리고 공급능력 등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 전화, 이메일, 신제품 카달로그, 샘플 등의 마케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책과 가치,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신규아이템 개발 및 납품 능력 등 자사의 정보만이 아니라, 바이어의 시장과 경쟁상황, 주요아이템의 도소매가 및 마진의 폭, FTA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이해수준 등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 및 시장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 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과 관련, 신정기업을 선별하여 컨설팅 지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및 각종 교육 등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개별 또는 단체참가 지원 등 직간접적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역할과 관련, 무엇보다 정부는 섬유기업들이 품목별 관세인하 스케줄, 원산지 기준을 포함하여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각종 FTA 발효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같은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개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 섬유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화 및 차별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경쟁력 상실부문의 업종전환 지원, 유망품목 및 유망기업 발굴,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해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봉제 집적지 조성 및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스트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스트림 간 기술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한·EU, 한·미 FTA를 계기로 수출이 늘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산품에 비해 관세 수준이 높아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TA를 활용하는 업체들도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협력업체까지 생산과 수출에 관한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어진 기회를 최대

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TO 통계
EU 조세총국 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염규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학사)
지식경제부 무역구제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상지원단 섬유분과 대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전문위원
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E-mail : gby@kofoti.or.kr
